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0289 제안연월일: 2025.4..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전기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1052	김영진의원	2024.06.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2.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4.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1353	이훈기의원	2024.07.03.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자원특허소위(2024.12.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4.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175	이철규의원	2024.7.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9.26.)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2.9.) 상정-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기계 기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4.8.) 상정, 축조심사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718	권향엽의원	2024.08.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2.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4.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3803	김교흥의원	2024.09.0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4.12.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025.4.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4. 8.)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9.)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용역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 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4항부터 제6항).
-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제3호의2 신설)
- 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 또는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9항 신설)
- 마. 기존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운영하던 자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충 전시설 신고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4. 부대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영세업체 부당 대우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 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험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 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를 "전력기술인단체에"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5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신고하여야한다.신고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 다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 설>

-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 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 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 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험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 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 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 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 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 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및 해임신고 등) ① -----

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1. • 2. (생략) <신 설>

- 3. ~ 10.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u>전덕기술인단</u>
체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3. ~ 10.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2. (생 략)	4. ~ 12.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